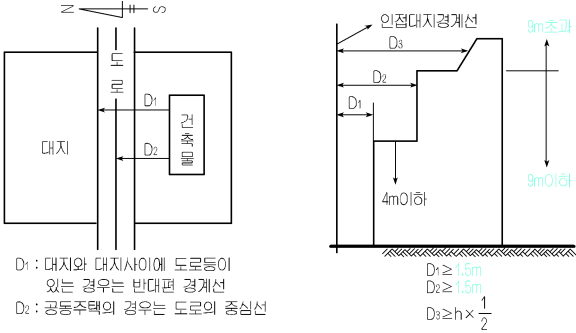


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**건축법규 1차 정오표**[2016.4.14]

| 해당 페이지 | 정 오 표 (파란색 글씨=수정된 부분)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4-8페이지 12기출 문제 | ㉠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다. ㉡ 벽을 목구조 방식으로 한다. ㉢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다. ㉣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이다. | | | | | | |
| 4-9페이지 2 건축물 | 7. 특수구조건축물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민구조 보,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•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<hr/> 8. 한옥 “한옥”이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. [참고] “한옥”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·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 | | | | | | |
| 4-13페이지 9 대수선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50%;">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</th> <th style="width:50%;">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</td> <td>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</td> </tr> <tr> <td>7. ① 6층 이상 건축물 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 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 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 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</td> <td>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 |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| 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| 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 | 7. ① 6층 이상 건축물 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 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 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 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|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 |
| 건축물의 부분 (주요구조부) |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| | | | | | |
| 6.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| 외부형태·담장을 변경하는 것 | | | | | | |
| 7. ① 6층 이상 건축물 ② 높이 22m이상 건축물 ③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제외) 안의 - 2,000㎡ 이상 다중이용업 -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|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30㎡ 이상 수선·변경 | | | | | | |
| 4-14페이지 07기출 문제 | ㉠ 「대지」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. | | | | | | |
| 4-16페이지 11 용도분류 ① 주요용도분류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50%;">9. 장례식장</td> <td>• 장례식장</td> </tr> <tr> <td>10. 숙박시설</td> <td>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</td> </tr> <tr> <td>11. 야영시설</td> <td>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9. 장례식장 | • 장례식장 | 10. 숙박시설 | 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 | 11. 야영시설 | 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 |
| 9. 장례식장 | • 장례식장 | | | | | | |
| 10. 숙박시설 | • 다중생활시설(500㎡ 이상 고시원) | | | | | | |
| 11. 야영시설 | • 300㎡ 미만 (관리동, 취사시설 등 포함) | | | | | | |
| 4-27페이지 15번 문제 | ㉠ 한식 지붕틀 사용 ㉡ 목구조 방식의 기둥 ㉢ 목구조 방식의 벽 ㉣ 전통양식 반영 | | | | | | |
| 4-41페이지 2 건축허가신청 (2) 허가신청서식의 범위 | <hr/> 1. 허가신청서 <hr/> 2. 토지권리관계증명서 <hr/> 3. 사전결정서 <hr/> 4. 다음의 기본설계도서 (실내마감도제외) <hr/> | | | | | | |

| 해당 페이지 | 정오표 (파란색 글씨-수정된 부분)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-126페이지 34번 문제 정답 | 34. 다 | | | | | | | | | | |
| 4-143페이지 (2)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(최대 거리 : 6m 이하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 건축물</th> <th>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전용주거지역</td> <td>- 1m 이상 (한옥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 • 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대상 건축물 |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| 1. 전용주거지역 | - 1m 이상 (한옥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 • 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 | | | | | | |
| 대상 건축물 |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| | | | | | | | | | |
| 1. 전용주거지역 | - 1m 이상 (한옥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마선 : 0.5m 이상 2m 이하 • 외벽선 : 1m 이상 2m 이하 | | | | | | | | | | |
| 4-150페이지 【4】 인접경계선의 인정 |  <p> D_1: 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등이 있는 경우는 반대편 경계선 D_2: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 $D_1 \geq 1.5m$ $D_2 \geq 1.5m$ $D_3 \geq h \times \frac{1}{2}$ </p> | | | | | | | | | | |
| 4-153페이지 9번 문제 정답 | 9. 라 | | | | | | | | | | |
| 4-197페이지 2 건축위원회의 조직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앙건축위원회</th> <th>지방건축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설치</td> <td>• 국토교통부</td> <td>•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</td> </tr> <tr> <td>2. 위원</td> <td>•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</td> <td>•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구 분 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| 1. 설치 | • 국토교통부 |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 | 2. 위원 | •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 | •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 |
| 구 분 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| | | | | | | | | |
| 1. 설치 | • 국토교통부 |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자치구 | | | | | | | | | |
| 2. 위원 | • 70인 이내(위원장 포함) | • 25명 이상 150명 이하(위원장 포함) | | | | | | | | | |
| 3 건축위원회 심의 【1】 심의사항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중앙건축위원회</th> <th>지방건축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•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•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•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•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•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<삭제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•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•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•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•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•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<삭제> | | | | | | |
| 중앙건축위원회 | 지방건축위원회 | | | | | | |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및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•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• 법 및 시행령의 재정,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•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조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 •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•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•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<삭제> | | | | | | | | | | |
| 4-199페이지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미관지구내 건축물 <삭제> 2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. 다른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| | | | | | | | | | |
| 4-248페이지 7.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|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축제한, 건폐율, 용적률에 대한 적용기준은 각각의 지역제한을 적용하되 걸쳐진 면적이 330m ² (상업지역에서 도로에 띠모양으로 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660m ²)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. | | | | | | | | | | |

| 해당 페이지 |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 | | |
|--|---|---|--|
| 4-267페이지 9번 문제 해설 | 일반상업지역 : 300% 이상, 1300% 이하 | | |
| 4-273페이지 3. 주차전용 건축물 | 주차장 사용비율 (건축물의 연면적) | 기 타 용 도 | 비 고 |
| | 1. 95% 이상 | 임의 | 1.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실, 관리실 면적은 주차면적에 포함됨 2. 시장 등은 조례로 기타 용도의 구역별 제한가능 |
| | 2. 70% 이상 | 근린생활시설/자동차 관련시설/문화 및 집회시설/판매시설/종교시설/운수시설/운동시설/업무시설/단독주택/공동주택/ 창고시설 | |
| 4-277페이지 15기출 문제 | ㉔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복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. | | |
| 4-314페이지 2 건축사 | 【2】 업무의 범위 <표 내용이 겹쳐져서 다시 풀어씀> 1.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.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: : | | |
| 4-317페이지 【5】 건축사업 | 3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| | |
| 【6】 신상변동신고 | 3. 소속건축사 | 입사·퇴사일 15일 이내 도지사 | |
| | 4. 건축사사무소 | 개설 신고사항변경, 휴업, 폐업 30일 이내-국토교통부장관 | |
| 06기출 문제 | ㉔ 3일 ㉔ 15일 | ㉔ 7일 ㉔ 30일 | |
| 08기출 문제 | ㉔ 3일 ㉔ 15일 | ㉔ 7일 ㉔ 30일 | |
| 4-322페이지 1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에 따른 실무교육 |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갱신 등록을 하기 전에 40시간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| | |
| 2 실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| 교육대상자 | 교육시간 | |
| | 1.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| 40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| |
| | 2.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| 8시간 | |
| | 3.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| 8시간 | |

| 해당 페이지 |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4-329페이지</p> <p>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</p> | <p>1. 효력상실처분을 할 때</p> <p>2. 건축사의 사망 또는 자격을 취소한 때 <삭제></p> <p>3. 건축사사무소 폐업 등의 신고가 있을 때</p> <p>4. 건축사 자격등록을 취소한 때</p> | | | | | | | |
| <p>4-339페이지</p> <p>14번 문제</p> | <p>㉠ 업무신고사항변경 : 15일 이내</p> <p>㉢ 건축사사무소휴업 : 15일 이내</p> <p>㉡ 자격취소 : 15일 이내</p> <p>㉣ 엔지니어링회사 입사 : 15일 이내</p> | | | | | | | |
| <p>14번 문제 해설</p> | <p>건축사사무소휴업 : 30일 이내</p> | | | | | | | |
| <p>4-342페이지</p> <p>33번 문제</p> | <p>㉠ 8시간 ㉢ 12시간</p> <p>㉡ 40시간 ㉣ 60시간</p> | | | | | | | |
| <p>33번 문제 해설</p>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97 788 991 833">교육대상자</th> <th data-bbox="991 788 1434 833">교육시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7 833 991 922">1.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</td> <td data-bbox="991 833 1434 922">40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7 922 991 1012">2.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</td> <td data-bbox="991 922 1434 1012" rowspan="2">8시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7 1012 991 1093">3.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교육대상자 | 교육시간 | 1.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| 40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| 2.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| 8시간 | 3.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|
| 교육대상자 | 교육시간 | | | | | | | |
| 1.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| 40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 | | | | | | | |
| 2.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| 8시간 | | | | | | | |
| 3.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| | | | | | | | |
| <p>4-345페이지</p> <p>50번 문제</p> | <p>㉠ 3일</p> <p>㉢ 7일</p> <p>㉡ 15일</p> <p>㉣ 30일</p> | | | | | | | |
| <p>50번 문제 해설</p> | <p>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.</p> | | | | | | | |
| <p>4-373페이지</p> <p>2 하자보수 등 (마지막에 내용 새로 추가)</p> | <p>[참고] 공동주택안전점검(법 제50조)</p> 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97 1415 707 1460">1. 점검의무</td> <td data-bbox="707 1415 1434 1460">관리주체 자체점검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7 1460 707 1516">2. 점검기한</td> <td data-bbox="707 1460 1434 1516">반기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97 1516 707 1646">3. 점검대상</td> <td data-bbox="707 1516 1434 1646"> ① 16층 이상 공동주택 ②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등급 C,D,E등급 공동주택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1. 점검의무 | 관리주체 자체점검 | 2. 점검기한 | 반기별 | 3. 점검대상 | ① 16층 이상 공동주택 ②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등급 C,D,E등급 공동주택 | |
| 1. 점검의무 | 관리주체 자체점검 | | | | | | | |
| 2. 점검기한 | 반기별 | | | | | | | |
| 3. 점검대상 | ① 16층 이상 공동주택 ②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안전등급 C,D,E등급 공동주택 | | | | | | | |
| <p>4 주택임대관리법</p> | <p>4 주택임대관리업</p> | | | | | | | |
| <p>[부록] 4-59페이지</p> <p>145번 문제</p> | <p>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게 될 때</p> | | | | | | | |
| <p>[부록] 4-87페이지</p> <p>131번 문제</p> | <p>㉢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㎡ 이상 50㎡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p> | | | | | | | |
| <p>[부록] 4-88페이지</p> <p>138번 문제 해설</p> | <p>건축사보 상주 공사감리대상</p> <p>3. 아파트의 건축공사</p> <p>4. 준다중이용건축물</p> | | | | | | | |

| 해당 페이지 | 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39번 문제 정답 | 139. ㉔ |
| [부록] 4-92페이지 157번 문제 해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철거신고 : 철거예정일 3일전 |
| [부록] 4-117페이지 131번 문제 | ㉔ 목구조 방식으로 벽을 축조한다. |
| 131번 문제 해설 |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, 벚짚, 목재,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<삭제> |
| [부록] 4-146페이지 144번 문제 | ㉠ 피성년후견인 ㉡ 피한정후견인 |
| [부록] 4-147페이지 148번 문제 해설 | <hr/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<hr/> 2. <u>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</u> <hr/> |
| [부록] 4-210페이지 149번 문제 | ㉔ 주차전용건축물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복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. |